의 안 번 호	제17호
의결 연월일	2023. 02. 21.

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, 제안자 : 2023년 02월 10일,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3년 02월 13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3년 02월 2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환경과장)

가. 제안이유

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되고 「대기 환경 보전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, 본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저공해 조치대상 범위 확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을 「논산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및 「대기환경 보전법」 개정에 따라 본 조례 관련 조항 정비 (안 제1조~제7조)
- 저공해 조치대상 범위 확대: 경유자동차 →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론요지 : 생 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